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교회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대략 12세기 중반부터인데,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교회법의 토대가 된 최초의 문헌은 1140년경에 편찬된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입니다. 그라시아노가 교회법전 편찬에 사용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법칙 등은 근대 유럽 국가의 법전 편찬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었고, 이 근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아울러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학문 방법은 이제 막 볼로냐에서 태동한 로마법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 방법으로 읽히고 해석되기 시작했고, 볼로냐 대학의 법학과 탄생에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볼로냐 대학에는 교회법학에는 그라시아노가, 일반 시민법학에는 이르네리우스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I.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1. 고전기 교회법(1140~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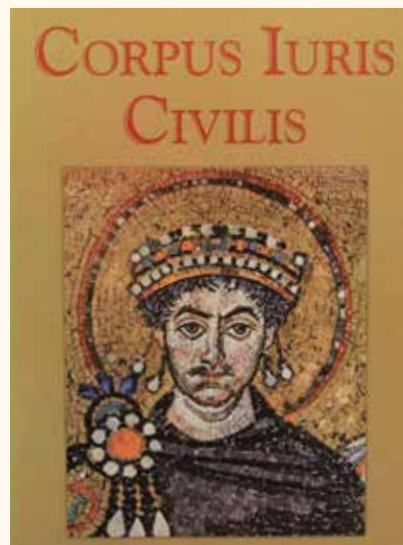
교회법이 독립 학문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는 로마법 연구의 쇠퇴와 연결됩니다. 1070년경 유스티니아누스의 <학설취찬(Digesta)>이 서방, 특히 이탈리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¹⁾ 이는 이르네리우스라는 한 인물이 의해서였습니다. <학설취찬>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학설취찬>은 533년 12월 16일 칙법으로 공포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목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디제스타 또는 판덱테(Digesta seu Pandectae)'라고 병기하였습니다.²⁾ 이 책은 그 시대의 법으로서 효력을 지녔

1) Cf. Ibid., p. 1043.

2) '디제스타(Digesta 또는 판덱테(Pandectae)'라 부르는 학설취찬에는 고전기 법학자들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는 '학설 모음집'입니다. 학설취찬은 총 5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432개의 제목이 달렸습니다. Digesta라는 용어는 라틴어 동사 'diger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digerere' 동사는 "제목 아래에 분류(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디제스타(Digesta)'라는 말은 학설취찬의 편집 방법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Digesta'는 판례와 주요 법학 교재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위와 풀로 발췌하여 만든 '법학 전집' 또는 '법을 백과사전'으로 일종의 인용 문집입니다. 반면 '판덱테(Pandectae)'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총람, 전집, 백과사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백과사전'을 뜻하는 다른 단어는 '엔치클로페디아(encyclopedia)'가 있는데 이는 영어에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encyclopedia'란 말은 '포괄적인 교육'이란 뜻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면의 지식을 한데 모으려고 시도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제스타와 판덱테라는 명칭은 같은 책을 각각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는 라틴어권과 그리스어권에 사는 모두를 배려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권으로 오토프레스가 재구성한 <시민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은 라틴어로 저술된 칙령 모음집인 칙법전(Codex), '디제스타 세우 판덱테(Digesta seu Pandectae)'라고 부르는 학설 모음집인 학설취찬, 법제도 원론집인 법학제요(Institutiones) 세 가지였으나, 훗날 신칙령 모음집인 신칙법(Novellae)이 추가됩니다. 칙법전(Codex)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부터 역대 황제들의 칙령, 즉 법률(leges) 모음입니다. 학설취찬(Digesta seu Pandectae)은 권위 있는 법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법리(iura) 모음이고요. 법학제요(Institutiones)는 가이우스의 '법학원론'을 바탕으로 사법 원칙들을 수집하여 편찬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학제요는 법학도를 위한 법학 입문서, 법학개요 성격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칙법(Novellae)은 534년에서 565년까지 포고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의 칙령 모음집입니다. 신칙법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사인(私人)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의 작품들과는 달리 그리스어로 저술하고 라틴어로 된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이를 1583년 프랑스의 법학자 고토프레두스(Dionysius Gothofredus, 1549-1622)가 칙법전, 학설취찬, 법학제요, 신칙법 네 가지를 묶어 <시민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법 대전>보다 83년 먼저 출간된 <교회법 대전(Corpus Iuris Canonici)>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시민법 대전' 또는 '로마법 대전'이라 명명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학계에게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이 비잔티움 문화권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비잔티움 로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서구의 법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학설휘찬>은 ‘기록된 이성ratio scripta’이라고 하여 11세기 볼로냐 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중세의 대학에서 법학 연구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12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법학부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해석을 위주로 하는 주석학파가 탄생합니다. 이는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로마법을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지요. 당시에 볼로냐 대학 법학부에서 공부한 많은 학생이 서유럽 전역에 흩어져 로마법을 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³⁾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이라는 ‘새로운 원문 자료’를 얻게 됨으로써 법률 연구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법학의 이러한 부흥은 교회법 수집에 대한 편집 기

술의 발전과 교회 법률 문화의 완성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의 주석가들은 본문 비평에 전념했고, 스콜라 신학자들의 변증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학문 연구에 변증법을 먼저 사용한 것은 로마법 주석가들이 아닌 스콜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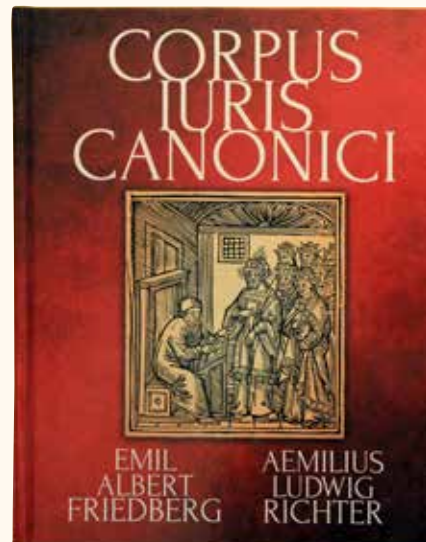
교회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대략 12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성적 관점의 성장과 학문 사상의 급속한 발전 등의 새로운 현상들은 11세기와 12세기의 총체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법학의 진보에는 전기 스콜라 신학과 시민법 주석가들의 기여가 컸지요. 그 외에도 교회법학의 탄생 과정

3) 고평식, 앞의 책, 57쪽 참조.

총 2권으로 구성된 <교회법 대전>

<요한 22세의 교회법 부록서Extravagantes Ioannis XXII (1325)>와 <공통 법령집Extravagantes communes(1500, 1503)>은 <그라시아노 법령집 Decretum Gratiani>과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Liber Extra>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Liber Sextus> <클레멘스 법령집Clementinae(1317)>에 추가되었지요. 이 6개 법령집을 통틀어서 로마법의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과 비교해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onici이라 불렀습니다. 교회법대전은 1500년 법학자 지오반니 카푸이스Giovanni Chappuis가 모은 수집물로, 1580년 7월 1일 그레고리오 8세가 헌장「쿰 프로 무네레Cum pro munere」(로마romana’판이라 일컫는다)를 통해서 승인했습니다. 이는 1917년 교회법전이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법의 가장 중요한 원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법대전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해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이라 부른 로마법의 관습을 모방해 6개의 법령집에 대한 공식 편찬이었으며, 이를 ‘교회법대전’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명칭은 그레고리오 8세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1582년 정본(공식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교회법대전 Corpus iuris canonici(1500)	시민법대전 Corpus iuris civilis(1583)
그라시아노 법령집 Decretum Gratiani(1140~1152)	칙법전 Codex 학설휘찬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 Liber Extra(1234)	Digesta seu Pandectae 법학제요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 Liber Sextus(1298)	Institutiones 신칙법
클레멘스 법령집 Clementinae(1317)	Novellae
요한 22세의 교회법 부록서 Extravagantes Ioannis XXII(1325)	비공식 (편집자 추가)
공통 법령집 Extravagantes communes(1500, 1503)	



에는 교회법학의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⁴⁾ 특히 1122년 보름스 정교 조약의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이라는 문구는 체계화된 교회법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⁵⁾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교회법의 토대가 된 최초의 문헌은 1140년경에 편찬된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입니다. 이 법령집의 원제목은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의 조화(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입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노 이전에도 교회법학이 신학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최초의 교회법 학자로 인정하는 데 난색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라시아노가 당시까지의 교회법 자료를 모두 모아서 체계를 세우고 한 과거 시대의 완성자이며, 동시에 교회법학의 선구자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⁶⁾ 이후 볼로냐 대학에서는 시민법과 더불어 교회법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방법과 의도는 이전의 법령집과 비교해볼 때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문제를 제기한 다음 교회법 자료의 원문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중 법적 권위의 ‘출처(Auctoritates)’라고 부른 과거의 법령과 결부된 주제를 스킴라적 변증법에 따라 해석했지요. 이와 더불어 교회법 자료의 원문에 그라시아노의 설명(주석)인 ‘그라시아노의 말들(dicta

4) Cf. P. Erdö, op. cit., p. 1043.

5) Cf. A. Campitelli, op. cit., p. 59.

6) E. Friedrich, G. Thielmann, Rechtsgeschichte: Von der Römischen Antike bis zur Neuzeit, 3. Aufl., Heidelberg, 2003, p. 213.

〈그라시아노 법령집〉

교회법은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 1140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학과 비교해 독립 학문으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원천이 곧 교회법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교회법은 신학의 예속학문 정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노 법령집에서 트리엔트 공의회에 이르러 교회법은 신학의 틀을 벗어나 비로소 독립 학문으로 윤곽을 드러내며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천 년간의 방대한 교회법을 한 개인인 그라시아노 수사 혼자서 편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볼로냐 대학이 시작할 때 이르네리우스는 〈로마법 대전〉 혹은 〈시민법 대전〉을 읽어내려 가기 바빴다면, 그라시아노는 기존의 중구난방으로 산재해 있던 천 년 간의 교회법 내용을 모아 단독으로 교회 법령집을 편찬했다는 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법령집을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의 조화(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수사학 학교

영국 옥스퍼드 보들레이안 도서관, 천문학과 수사학 학교(Schola Astronomiae et Rhetoricae)라고 쓰여 있습니다.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도가 탄생하기 이전 중세 대학에서 법학은 수사학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Gratiani'을 첨부했습니다. 후에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이러한 학문 방법은 이제 막 태동한 로마법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 방법으로 볼로냐에서 읽히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역사적 중요성은 로마법학이 당대에 지성적인 학문, 즉 원칙과 이론의 총체로서 '기록된 이성ratio scripta'을 구성했다면, 교회법학은 이러한 원칙들을 그 시대의 구체적 법 규범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학 강의와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권장으로 교회법 연구는 '교회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데크레티스티카decretistica'로 대표되는 '법령 주석자들'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요. 이후 교회법학은 볼로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해 프랑크-라인학교와 앵글로-노르만학교에서도 주요 학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⁷⁾

그렇다면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어떤 특징이 교회법의 발전을 촉진한 것일까요? 우선 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본문 자체를 학문적 전개에 더 적합하도록 총 3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편 교령Decreti Prima Pars'은 교회법의 기원, 일반 규범과 신분법, 사제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총 101개의 부distinctiones와 조canon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편 교령Decreti Pars Secunda'은 36개의 법률 사례causae를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한 문제를 나열한 다음 그에 해당되는 법조문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제3편 교령Decreti Pars Tertia'은 성사와 준성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1편과 마찬가지로 5개의 부distinctiones와 조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⁸⁾ 아울러 각 조문에는 그라시아노 자신의 설명 '그라시아노의 말들dicta Gratiani'을 주석처럼 첨가했지요.

그라시아노는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 조화하기 위해 '출처와 이유auctoritates et rationes'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우크토리타테스auctoritates'란 출전을 정리하는 규칙을 말하며, '라티오네스rationes'란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 조화하기 위해 적용된 이유 또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라시아노는 '이유rationes'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라시아노가 사용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법칙 등은 근대 유럽 국가의 법전 편찬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었

고, 이 근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장소의 이유Ratio loci	특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⁹⁾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시간의 이유Ratio temporis	신법(나중의 법률)이 구법(먼저의 법률)을 폐지한다.
의미의 이유Ratio significationis	단어에 의미에 따라 규범의 정신과 조화한다.
관편의 이유Ratio dispensationis	규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면했던 이유를 명시한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의 이러한 구분은 최초의 법령주석가 decretalista로 알려진 파우카팔레아Paucapalea의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집의 약어abbreviazione와 변형, 그리고 일명 '팔레아Paleae'로 잘 알려진 '가필'은 12세기 학자들이 한 침삭으로 법령집의 본문 전체에 손을 댔습니다. 아울러 이 본문에는 주석도 달았고요. 그 주석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아마도 그 시대의 모든 법령 편찬자가 주석을 단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주석은 여러 필사본 가운데서 대체로 같은 형태로 전수된 일련의 주석들을 발췌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주석들은 법령집 여기저기서 발췌해 간략한 구절들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1180년경 법령집 '주석에 대한 참고자료들apparati di glosse'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들은 여러 필사본 가운데서 변함없이 같은 형태로 발견된 주석들입니다. 후에 그러한 자료들은 특정 저자의 독립된 작품으로 탄생하는데, 그 가운데 1215년경에 저술된 조반니 테우토니코Giovanni Teutonico의 자료는 법령집에 대한 표준 주석으로 학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자료들 가운데 1240년에서 1246년 사이에 브레시아의 바르톨로메오 Bartolomeo di Brescia가 개정한 번역 또한 강의에서 널리 쓰였으며, 17세기까지 법령집 본문과 함께 출판된 표준 주석의 확정판이 되었습니다.¹⁰⁾

7) Cf. P. Erdö, op. cit., p. 1043.

8) 김상용, 「법사와 법정책: 게르만법사, 교회법사, 독일민법학사 중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45쪽 참조.

9) 중세 시대에 특별법은 황제의 보편법(라. ius universale, 이. diritto universale)에 견주어 봉토, 자치도시, 수공업 조합(길드), 군주국가 등의 지역조직법diritto degli ordinamenti locali이었다. 특별법의 법원은 봉토에서는 관습, 자치도시와 조합은 (도시)규약, 군주국은 군주제 법이다. 보통법은 특별법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의 결여lacuna legis'로 규정하지 못할 경우, 특별법을 보조·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F. Giudice, Ius proprium, in Dizionario di storia del diritto medievale e moderno, p. 210.

10) Cf. P. Erdö, op. cit., p. 1044.

